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244호
- 나. 제안자 : 김인제 의원 외 34명
- 다. 제안일 : 2024. 10. 16.
- 라. 회부일 : 2024. 10. 18.

2.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보장 및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관공서를 방문하는 등의 상황에 있어 민원실 등을 방문했을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민원 취약계층에게 수어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및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항제11호)
- 나. 다문화가족의 지원범위 중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 기존 통·번역 외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확대 규정 (안 제7조제2항제7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4. 10. 23. ~ 10. 27.) 결과 : 의견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글로벌도시정책관) : 원안 가결

5. 검토 의견

가. 조례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관공서를 방문하는 등의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외국인주민에게 통역·번역 및 수어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략) <u><신설></u> <u>11.</u> (생략)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u>통역·번역</u> 서비스의 제공 8. ~ 11. (생략)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u>11. 외국인주민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및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u> <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_____ <u>통역·번역</u> <u>및 수어통역</u> _____ 8. ~ 11. (현행과 같음)

나. 검토 내용

“조례 개정의 근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이유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관공서 방문 등 민원, 행정서비스 이용시 겪는 어려움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장

애인복지법」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공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공공기관¹⁾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정의)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 또한,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공공행사, 사법·행정 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주민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사무로 볼 수 있는 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국수화언어법」

-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어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략)

-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그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이들 중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 혹은 「지방자치법」 제16조2)에 따른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서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외국어 통역·번역 및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2)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조례 개정의 타당성”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인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의 책무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고, 수어통역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어통역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인 결혼이민자 등으로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소통장애인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 또한,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지원은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점, 장애가 있는 ‘외국인주민’이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용어의 적합성”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수어통역 서비스의 “수어”란 “수화 언어”의 줄임말로, 청각장애인이 손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 전달 방법임. 수어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단일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혹은 문화권마다 독자적으로 사용되며 비교언어학적으로는 7가지로 분류³⁾됨. 따라서 다른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함
- 수어통역의 사전적 정의는 청각장애인의 수어를 공용어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을 뜻하며, 관련 법인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수어통역을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 프랑스 수어족, 영국 수어족, 아랍 수어족, 스웨덴 수어족, 독일 수어족, 일본 수어족, 기타 고립어(중국어 등)
* 한국수어는 일본수어족에 속함. 또한 대부분의 유럽 수어는 프랑스수어족에 속함.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이란 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한편, 현행 조례의 주요 지원 대상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해봤을 때 개정 조문의 수어 통역은 한국수어와 국어간 변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수어와 국어간 변환을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수어통역의 정의에 국제수어와 국어간 변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새롭게 규정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정책 시행시 국제수어통역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외국어 통역·번역과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수화언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수어통역' 서비스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는 서비스 지원의 제약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수어통역과 이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함
-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경우 행정서

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의사소통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 다만, 일반적으로 ‘수어통역’은 한국수어와 국어간 변환을 의미하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고려하여 조례에서 사용되는 ‘수어통역’의 정의에 국제수어와 국어간 변환을 포함하도록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